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횡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쉽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치통지 횡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선의 위치통지 횡수·방법 조정(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입항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1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조업자제해역”을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으로, “2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을 “2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하는)”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를 “12시간 이내”로,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를 “통지부터는 이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상특보”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로,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을 “다음”으로, “추가로 위치통지”를 “위치통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시”를 “당시 기상특보 발효 해역에서”로, “어선은 기상특보”를 “어선 및 기상특보 발효 이후 발효 해역으로 진입하는 어선은 기상특보”로, “출항한”을 “발효 해역에서 출항하는”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를 “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1일 2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12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1일 6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4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u> 1. <u>특정해역에 들어하는 어선: 1일 3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u> 2. <u>조업자제해역에 들어하는 어선: 1일 2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u>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다만,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입항하는 어선은 제외한다.</u> 1. <u>일반해역에 들어하는 어선: 1일 1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u> 2. <u>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들어하는 어선: 1일 2회 이상(최초의 위치통지는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u>

3. 일반해역에 들어하는 어선: 1일 1회(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매 12시간 간격(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기상특보 발효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 및 기상특보 발효 이후 발효 해역으로 진입하는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발효 해역에서 출항하는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1일 2회 이상 (최초의 위치통지는 12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1일 6회 이상 (최초의 위치통지는 4시간 이내에 하고, 두 번째 통지부터는 이전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23